

##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

### \*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?

- 갑작스러운 **위기상황**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·의료·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### \*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?

- 갑작스러운 **위기상황**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

#### <위기사유>
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·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·단전 1개월 경과 시
  - \* 주소득자의 휴·폐업(간이과세자로 1년이상 영업지속, 소규모제조·도매업자), 실직(고용보험 미가입자 등)으로 생계유지 곤란
  - \* 출소 후(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) 생계 곤란, 거소 없는 경우
  - \* 가족으로부터 방임,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 (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)

#### <소득·재산기준>

- **소득** : 최저생계비 150%이하 (단,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)
- **재산기준** : 1억 3,500만원
- **금융재산** : 300만원 이하(주거지원 500만원 이하)
- ※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

### \*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?

| 종 류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생계<br>지원          | •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고 1,009천원 (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• 각종 검사,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<br>- 300만원 이내 (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만원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• 국가·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<br>-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5천원 (대도시, 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|
| 금전·현물<br>지원       | •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제공<br>-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251천원 (4인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• 초·중·고등학교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초 191천원<br>중 304천원<br>고 373천원 및 수업료·입학금 |
|                   | •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<br>- 동절기(10~3월) 연료비 : 83천원<br>- 해산비·장제비·전기요금 : 50만원(1회)<br>※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(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민간기관·단체<br>연계지원 등 | 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• 상담 등 기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필요시 가구별 위기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요사업 안내서비스 실시

※ 부정수급...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.

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,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**남동구희망복지지원과**

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 
www.namdong.go.kr



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



위기에 처한 이웃을 찾습니다.  
원하는 희망을 귀담아 듣겠습니다.  
통합적 맞춤형복지서비스로 돕겠습니다.  
남동구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겠습니다.

어려운 이웃의  
희망을 찾죠, 듣죠, 돕죠!

**희망복지지원과**  
Tel\_453-2240



## 통합사례관리란?

-경제적,의료적,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뿐만 아니라 보건, 교육,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활동입니다.

## 어떤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-가족해체,경제적 기능상실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  
-장기적으로 지역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게 도움을 드립니다.

## 어떻게 신청하나요?

-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직접 신청하거나,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를 알고 계신 친족, 이웃 주민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

## 통합사례관리란?



##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세요!

- ▶나눔의 종류 : 현금, 물품, 자원봉사 등
- ▶기 간 : 연 중
- ▶접수처 : 남동구청 희망복지지원과 (032-453-2570) 각 동주민센터(동 복지위원회)

※ 후원시 법인세법 제34조, 소득세법 제52조에 의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동 복지위원회란?

남동구만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찾고, 듣고, 돕기 위하여 구성·운영하고 있는 동단위 민·관협력복지협의체 기구임